

세종자이e편한세상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체크리스트

세종자이e편한세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2조입주대상자자격 확인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당첨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신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의뢰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전 제출한 입주대상자(당첨자)의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확인하여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입주대상자(당첨자)에 대하여 7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소명기간 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7조 제8항에 따라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자로 전산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의거 입주대상자(당첨자)는 아래의 제출기한까지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자이e편한세상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일정 안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당첨자)	계약체결(당첨자)
2019.06.10(월) 금융결제원 (www.ap2you.com)	2019.06.11(화) ~ 06.14(금) 10:00~17:00	2019.06.26(수) ~ 06.28(금) 10:00~16:00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장소 : 세종자이e편한세상 견본주택(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		

자격요건 확인 및 본인 검증서류

구분	체크사항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전원) /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발급 - 배우자 분리세대 여부 확인 - 만 65세 이상 (1954.05.24 이전) 직계존속 3년 이상 (2016.05.24 이전) 등재 확인 - [민영주택] 만 30세 이상 기준 : 1989.05.24 이전 출생자 (미혼자 무주택기간 산정 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초본	-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발급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발급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인감도장, 신분증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input type="checkbox"/>

사업주체 및 관련기관 자격확인 등 추가 필요서류

구분	체크사항	확인
주민등록표등본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2016.05.24 이전)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하여 상세발급) - [민영주택] 만 30세 이상(1989.05.24 이전)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2018.05.24 이전) 계속하여 부양한사실 추가 증빙용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하여 상세 발급)	<input type="checkbox"/>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 <input type="checkbox"/>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
출입국사실증명원	- 해당지역 신청자의 경우 필수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5.24) 까지로 설정	<input type="checkbox"/> 본인
혼인관계증명서	- [국민주택] 만 30세 이전 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2016.05.24 이전) 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민영주택] 만 30세 이전(1989.05.24 이전) 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민영주택] 만 18세 이상(2001.05.24 이전)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민영주택] 만 30세 이상(1989.05.25 이후) 미혼의 직계비속이 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2018.05.24 이전) 계속하여 부양한사실 추가 증빙용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하여 상세 발급)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만 18세 이상 자녀 () <input type="checkbox"/> 만 30세 이상 자녀 ()
최하층 우선배정인증서류	-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 [만 65세 이상인 자(1954.05.24 이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	<input type="checkbox"/> 대상자 ()
부적격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소명 서류 관련	- 소형·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input type="checkbox"/>
	- [국민주택]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자격심사 조회 이후 자산·소득에 대한 적격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 기타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checkbox"/>

제 3자 대리인 서류접수 시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05.2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기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처리일 기준, 가족대장 등본 포함)

②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등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가 필요함입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아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하며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당첨자) 명단은 개별로 통보하지 않으며, 당첨자 발표 이후 아파트투유(www.ap2you.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당첨자의 전화문의에는 개별 응답하지 않으니 아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